



금융위원회

# 보도자료



보도

2020.12.31.(목) 조간

배포

2020.12.30.(수)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담 당 자	윤 현 철 서기관 (02-2100-2831) 이 지 형 사무관 (02-2100-2836)
	금융위 은행과장 박 민 우(02-2100-2950)		이 종 림 서기관 (02-2100-2951)
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변 제 호(02-2100-2650)		오 유 정 서기관 (02-2100-2651)
	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윤 상 기(02-2100-2630)		마 순 사무관 (02-2100-2637)
	금융위 금융혁신과장 윤 병 원(02-2100-2530)		김 태 훈 서기관 (02-2100-2533)
	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장 손 성 은(02-2100-2910)		최 상 아 사무관 (02-2100-2911)
	금융위 감독제도팀장 권 주 성(02-2100-2591)		박 경 덕 사무관 (02-2100-2594)
	금융위 기획협력팀장 오 화 세(02-2100-1730)		고 선 영 사무관 (02-2100-1741)

## 제 목 :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

### 1.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이 지속됩니다.

- ① (소상공인 지원) 「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」의 보증료·금리를 인하하고,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(3조원)이 개시됩니다. (‘21.1.18.)
- ② (착한임대인 지원)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, 해내리 대출(기은) 지원 대상에 한시적으로 ‘착한 임대인’이 포함됩니다. (‘20.12월 ~ ‘21.6월)
- ③ (중소기업 지원) 원활한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하여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됩니다. (‘21.1.4.)
- ④ (상환유예 확대)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(실직·폐업 등)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. (‘20.12.1.)

## 2.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이 가속화됩니다.

- ⑤ **(공모주 배정개선)**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%p 확대(최대 30%)됩니다. (21.1월)
- ⑥ **(플랫폼 활용)**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하여, 은행앱을 통한 음식 주문·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. (21.7월)
- ⑦ **(오픈뱅킹 확대)** 저축은행·증권사·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하고, 조회수수료가 종전 대비 1/3 수준으로 인하됩니다. (21.상반기)
- ⑧ **(ISA 제도 개선)** ISA 제도가 영구화되고, 소득 요건이 폐지되며,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하게 됩니다. (21.1분기)
- ⑨ **(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)**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가 기존 연간 15억원 → 30억원으로 확대됩니다. (21.상반기)
- ⑩ **(헬스케어 서비스)** 보험계약자 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(21.1.1.)

## 3.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- ⑪ **(법정 최고금리 인하)**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% → 연 20%로 인하여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됩니다. (21.하반기,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후)
- ⑫ **(금융소비자 권익 제고)**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·위법계약해지권·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. (21.3.25.)
- ⑬ **(금융사기 신고)**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·수신시간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. (20.11.20.)
- ⑭ **(착오송금반환 지원)**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. (21.7월)
- ⑮ **(정보보호 강화)**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의 체계적 점검·파악을 위하여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됩니다. (21.2.4.)
- ⑯ **(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)** 정보활용 동의서의 사생활 침해정도, 소비자 이익·혜택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이 부여됩니다. (21.2.4.)

#### 4.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.

- ⑰ (실손의료보험 개편)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. (‘21.7.1., 추진)
- ⑱ (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개선)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지급제가 도입됩니다. (‘21.1.1.)
- ⑲ (소액단기보험 규제완화)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300억원→10억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. (‘21.6.9)
- ⑳ (신협 대출규제 완화) 권역(10개)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(전체 대출의 1/3 이하)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 (‘21.1.1.)
- ㉑ (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)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정족수가 7명→5명으로 축소됩니다. (‘21.1월)

#### 5.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지속 확보해 나겠습니다.

- ㉒ (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) 내부통제·위험관리, 건전성관리, 공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관리·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됩니다. (‘21.하반기)
- ㉓ (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)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게 되며,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가 인하(4.5% → 2~3%)됩니다. (‘21.2월)
- ㉔ (미취업청년 지원 강화)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이 확대(만 30세 미만 → 만34세 이하)되고, 상환유예 기간도 확대(최장 4년 → 최장 5년)됩니다. (‘20.12월~)
- ㉕ (주택연금 개선)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,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됩니다. (‘21.6.9.)
- ㉖ (가상자산사업자 신고)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,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·검사받게 됩니다. (‘21.3.25.)
- ㉗ (재산상 이익 공시)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공시(10억원 초과시)할 때, 이미 제공된 금액 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도 포함됩니다. (‘21.1.1.)
- ㉘ (과도한 이익 제공 제한)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됩니다. (‘21.7.1.)
- ㉙ (금융교육 활성화)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·컨설팅을 이수하는 경우 0.1%p 내외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. (‘21.6월)

☞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세부내용과 담당자 연락처 등은 [붙임]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합병관리청 콜센터	 나눔의 자리는 우리 모두의 건강
-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

연번	제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<b>1.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이 지속됩니다.</b>				
1	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·개편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체 소상공인 대상 「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」 운영중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보증료율(0.9%→인하폭 매년 상이)·금리(2~4.99% → 2~3.99%)를 인하하고,</li> <li>②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(3조원 규모, 최대 1,000만원 대출) 신설</li> </ul>	「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·개편」 ('21.1.18)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(02-2100-2864)
2	착한임대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상공인 정책자금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부동산업은 제외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, 해내리 대출(기은)의 지원대상에 '20.12월 ~ '21.6월간 한시적으로 '착한 임대인'을 포함</li> </ul> <p>* 세부요건은 기관을 통해 확인 요망</p>	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('20.12.18.) 기은 해내리대출 ('21.1월)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(02-2100-2865)
3	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도입	<p><b>(신규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방식의 팩토링 사업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조기 자금조달 수단 및 연쇄부도 방지 안전망으로 활용(총 400억원)</li> </ul> <p>* 신보가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(factoring)하고, 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</p>	신용보증기금 팩토링 업무처리방법 ('21.1.4.)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(02-2100-2862)
4	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 확대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코로나19 피해자에게 최대 1년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* 지원</li> </ul> <p>*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, 청년층 등에 대해서도 지원</p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,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 없이 상환유예 지원</li> </ul>	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협약 ('20.12.1.)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(02-2100-2612)

연번	제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<b>2.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이 가속화됩니다.</b>				
5	기업공개(IPO)시 공모주 배정개선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20%~25%* * 우리사주조합 미청약물량의 최대 5%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모주 배정시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을 축소(10% → 5%)하고 동 축소 물량 5%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</li> </ul>	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('21.1.1.)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(02-2100-2653)
6	은행앱에서도 음식 주문·결제 가능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은행앱에서는 은행 업무만 가능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 영위를 허용하여, 은행앱에서도 음식 주문·결제와 같은 서비스 제공</li> </ul>	혁신금융 서비스 출시 ('21.7월)	금융위원회 은행과 (02-2100-2954)
7	오픈뱅킹 참가기관 확대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은행, 핀테크앱, 상호금융, 13개 증권사 앱에서 오픈뱅킹 이용가능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오픈뱅킹 참가기관 확대 및 조회 수수료 인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i) (참가기관 확대) 저축은행, 4개 증권사, 카드사 추가 참여</li> <li>ii) (조회수수료 조정) 이용기관이 부담하던 조회수수료가 종전 대비 1/3 수준으로 인하('21.1.1.~)</li> </ul> </li> </ul>	상반기 *개별기관의 전산개발일정에 따라 순차적용	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(02-2100-2535)
8	ISA 제도개선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ISA가 한시제도(~'21년)로 운영되고, 소득요건을 두는 등 가입에 제한</li> <li>○ 주식투자 제한, 의무납입기간**·납입한도**로 적극적 투자에 제약 * 세제혜택을 받기 위하여 5년간 가입유지 ** 年 2천만원(미납입분 차년도 이월도 제한)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ISA 제도 영구화*, 가입시 소득요건 폐지** 등 대상 확대 * '21.12.31일까지만 가입가능 → 영구화 ** 근로·사업소득자 → 19세 이상 거주자</li> <li>○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</li> <li>○ 의무납입기간* 단축, 납입한도 이월 허용** 등 이용여건 개선 * 세제혜택을 위한 납입기간 5년 → 3년 ** 年 2천만원 한도 → 과거 미납입분 이월 가능</li> </ul>	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('21.1분기[잠정])	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(02-2100-2662)

연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9	클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클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 한도는 연간 15억원</li> </ul> <p>⇒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활용도가 제한</p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클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의 발행 한도를 연간 30억원으로 확대*</li> </ul> <p>* 채권의 경우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, 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</p>	자본시장법 시행령 (‘21.상반기[잠정])	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(02-2100-2663)
10	헬스케어 일반인 확대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만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가능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험회사가 기존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가능</li> </ul>	부수업무 심사기준 개선 (‘21.1.1.)	금융위원회 보험과 (02-2100-2961~2)

### 3.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11	법정 최고금리 인하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융회사에 최고금리 연 24% 적용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0%로 인하</li> </ul>	대부업법 시행령 (‘21.하반기)	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(02-2100-2511)
12	금융소비자 권의 제고	<p><b>(신규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약철회권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융상품(예금성 상품 제외)에 따라 계약 후 7~15일 내 자유롭게 해지 가능</li> </ul> </li> <li>위법계약해지요구권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계약 후 5년내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 재산상 불이익 없이 계약 해지 가능</li> </ul> </li> <li>자료열람요구권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분쟁조정, 소송 시 필요한 자료를 판매자에 열람 요구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	금융소비자 보호법 (‘21.3.25.)	금융위원회 소비자정책과 (02-2100-2642)

연번	제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13	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전화번호 등 신고	<p><b>(신규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 구제 신청과 동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<b>전화번호·수신시각</b>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서식 신설</li> </ul>	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('20.11.20.)	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(02-2100-2811)
14	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	<p><b>(신규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 보다 쉽고 저렴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 지원제도를 운영</li> </ul>	예금자보호법 ('21.7월)	금융위원회 구조개선 정책과 (02-2100-2911)
15	금융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융회사*의 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·평가가 어려움</li> </ul> <p>* 은행, 카드, 보험, 금투, CB사, MyData 등 약 3,000개 금융기관</p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보보호 실태 평가체계 도입<sup>①</sup> 취약부분 상시 피드백<sup>②</sup>,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<sup>③</sup>을 통해 정보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</li> </ul>	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('21.2.4.)	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(02-2100-2696)
16	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보활용 동의서의 내용·혜택 등에 대한 평가체계가 없음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생활 침해정도<sup>①</sup>, 소비자의 이익·혜택<sup>②</sup>, 쉬운 용어 사용<sup>③</sup>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등급 부여</li> </ul>	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('21.2.4.)	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(02-2100-2696)

연 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<b>4.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.</b>				
17	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(4세대 실손) (추진)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착한 실손의료보험(3세대) 상품</li> <li>① (자기부담률) 급여 10%, 비급여 20%* * 비급여 3대 특약은 30%</li> <li>② (통원 공제액) 급여·비급여 구분없이 최소 1~2만원*</li> <li>* 의원 1만원, 병원 1.5만원, 상급병원 2만원</li> <li>③ (보험료 차등제) 할인·할증 없음</li> <li>④ (보장내용 변경주기) 15년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도입</li> <li>① (자기부담률) 급여 20%, 비급여 30%</li> <li>② (통원 공제액) 급여·비급여 구분하고 비급여 공제액 상향</li> <li>* [급여 의원병원 최소 1만원 상급병원 최소 2만원 [비급여] 3만원</li> <li>③ (보험료 차등제)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 할인·할증 적용</li> <li>④ (보장내용 변경주기) 5년</li> </ul>	보험업 감독규정 (‘21.7.1.)	금융위원회 보험과 (02-2100- 2963)
18	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지급체계 개선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험회사 등이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도하게 선지급*함에 따라, 소비자 피해, 불건전 모집 등이 빈번</li> <li>* 철새·먹튀 설계사 양산 및 보험계약 유지관리 소홀, 허위계약 등 문제 발생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* 및 수수료 분할지급**을 도입하여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</li> <li>* 월납 보험료의 1,200% 이내로 제한</li> <li>** 수수료 분급시, 분급 총액을 선지급 총액 대비 5%이상 높게 책정하여 분급 유도</li> </ul>	보험업 감독규정 (‘21.1.1.)	금융위원회 보험과 (02-2100- 2963)
19	소액단기보험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험업 허가시 판매상품 특성·규모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300억원의 자본금 필요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사 (소액단기전문보험사)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(10억원 이상 시행령 규정)</li> </ul>	보험업법 (‘21.6.9.)	금융위원회 보험과 (02-2100- 2962)

연번	제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20	신협 대출규제 완화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 단위신협은 전체대출 중 <b>공동유대</b>(전국 226개 시·군·구 단위) 內 조합원에 대해 <b>2β 이상</b> 대출해야 하며 비조합원 대출은 전체 대출의 <b>1β 이내로 제한</b>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국을 10개 권역*으로 구분하여 권역내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(전체 대출의 1/3 이하) 대상에서 제외</li> </ul> <p>* ①서울 / ②인천·경기 / ③부산·울산·경남 / ④대구·경북 / ⑤대전·세종·충남 / ⑥광주·전남 / ⑦충북 / ⑧전북 / ⑨강원 / ⑩제주</p>	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('21.1.1.)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(02-2100-2991)
21	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축소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<b>최소 7명 이상</b>으로 구성토록 규정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감사인선임위원회 <b>최소 정족수를 축소</b>(7명→5명)</li> </ul>	외부감사법 시행령 ('20.1월)	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(02-2100-2692)

## 5.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지속 확보해 나겠습니다.

22	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·시행	<p><b>(신규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시행에 따라 '21년 하반기부터 <b>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고 감독</b></li> </ul> <p>* 내부통제·위험관리, 건전성관리, 공시 등</p>	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(하반기)	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 혁신단 (02-2100-2594)
23	저신용·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제도 개편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저신용·저소득층 대상 '교육비 지원대출'은 <b>공교육비만 지원</b></li> <li>○ 취약계층의 공교육 및 사교육비 자금을 지원하는 '<b>취약계층 교육비 대출</b>' 금리는 연 4.5% 수준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저신용·저소득층 대상 '교육비 지원대출'에 <b>학원비 등 사교육비도 포함</b></li> <li>○ 취약계층의 공교육 및 사교육비 자금을 지원하는 '<b>취약계층 교육비 대출</b>' 금리를 연2~3% 수준으로 인하</li> </ul>	서민금융진흥원 내규 ('21.2월)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(02-2100-2614)

연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24	미취업청년 지원 강화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* 지원</li> <li>*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 가능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*을 확대하고, 미취업시 상환유예 기간**을 상향 조정</li> <li>* 만 30세 미만 → 만 34세 이하</li> <li>** 최장 4년 → 최장 5년</li> </ul>	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협약 (‘20.12.1.)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(02-2100- 2612)
25	주택연금 가입범위 확대 및 보장성 강화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만 주택연금 가입 가능</li> <li>○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가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승계 곤란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입가능 주택의 가격 상한을 ‘공시가 9억원’으로 완화하고,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허용</li> <li>* 가입대상 16.6만 가구 증가</li> <li>○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방식의 주택연금 허용</li> <li>○ 월 수령액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 신규도입</li> </ul>	<p>한국주택 금융공사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가입주택 범위 확대 (‘20.12.8.)</li> <li>· 연금수급권 자동승계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(‘21.6.9.)</li> </ul>	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(02-2100- 2523)
26	가상자산 사업자에 신고 의무 부과	<p><b>(신규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받고,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·검사</li> </ul>	특정금융 정보법 (‘21.3.25)	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(02-2100- 1741)

연 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27	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금액에 '제공 예정된 금액' 포함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은행이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 이용자에게 '제공한 재산상 이익'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시</li> <li>* 제공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은행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정확히 알리는데 한계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산상 이익 제공시 공시하는 금액 기준에 제공된 금액뿐만 아니라 향후 제공이 예정된 금액까지 포함</li> </ul>	은행업 감독규정 (‘21.1.1.)	금융위원회 은행과 (02-2100- 2953)
28	대형 법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용카드사의 대기업 등 법인회원 유치를 위한 경쟁으로 과도한 혜택이 제공되는 등 마케팅비용이 상승하고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증가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의 연간 이용 실적 대비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</li> </ul>	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(‘21.7.1.)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(02-2100- 2992)
29	정책서민금융 -금융교육컨설팅 연계 추진	<p><b>(신규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관리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우대금리 (0.1%p 내외) 제공</li> <li>* 단, 교육·컨설팅 이수가 대출의 전제 요건인 상품(햇살론youth 등)은 제외</li> </ul>	'21.6월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(02-2100- 2614)